

●문화재청공고 제2022-26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 연대	소재지	소유자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	1건 25점	27.8 ×21.2 등	1936 ~1954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	군산근대역사 박물관

2) 등록 예고 사유

-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군산 구마모토 농장*에 설립된 자혜진료소 (1935년) 및 개정중앙병원(1947년), 농촌위생연구소(1948년) 등을 운영하면서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진료 일지 등 관련 기록물임. 구마모토 농장 소작인 3천 가구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기록한 자혜진료소 일지와 진료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입원 및 수술환자를 위한 의료시설로 설립된 개정중앙병원 일지를 통해 농촌 주민의 건강상태와 농촌의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영춘 박사는 세브란스 의전 재학시절 설립자 에비슨의 가르침이었던 “치료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해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며,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에서는 당시 농촌사회에 만연한 기생충, 결핵, 전염병 등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전 농촌위생의 개념을 갖춘 공중보건 의료사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 구마모토 리헤이가 1935년 군산개항지 중심 500정보 토지를 매입·설립한 농장으로 1945년까지 운영함

3. 등록 예고일 : 2022. 7. 14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 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 팩 스 : (042)481-4899
-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